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및 제공 정보유형을 구체화하고 개정안의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7조의2제1항 중 “금지”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를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을 “자는”으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 ----- -----금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 ----- -----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 ---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② ----- ----- ----자는-----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삭 제></u>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07
----------	------

발의연월일 : 2024. 9. 27.

발 의 자 : 맹성규 · 한민수 · 윤종균
황명선 · 이기현 · 황운하
복기왕 · 손명수 · 이연희
문진석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및 제공 정보유형을 구체화하고 개정안의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u>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u> <u>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u> <u>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u> <u>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u> <u>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 <u>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u> <u>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u> <u>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u> <u>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u> <u>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u> <u>이유가 있는 자에 관한 다음</u> <u>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u> <u>수 있다.</u> <u>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u> <u>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u> <u>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u> <u>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u> <u>사항</u> <u>2. 승차권 구매이력</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u> <u>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u> <u>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